

제2655호
2019. 5. 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 제2019-37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제2019-3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제2019-37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373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2019.6.5.시행)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안 제28조)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서울 중구청), 문의전화 : 3396-5013, FAX: 3396-8670, 전자우편 : 100jihye@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신설></p>	<p>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374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금용도에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부대경비를 신설토록「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용도에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부대경비 신설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여관동, 서울 중구청), 문의전화 : 3396-5012, FAX: 3396-8670, 전자우편 : gigusar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부대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1.~2. (생략) 3. <신설>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부대경비</u>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377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 후단신설

- 【변경전】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변경후】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3396-5474, 팩스 : 3396-8756, email : ysw4426@junggu.seoul.kr,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 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p> <p>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p> <p>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u>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u></p>